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2019. 6. 3. 보도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제 목 : 5월 선고 즉시보도사건 외 보도자료

우리 재판소에서 2019. 5. 30. (목) 선고한 심판사건 결정요지 등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9. 5. 30. (목) 14:00 ~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붙임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 3건. 끝.

보 도 자 료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관한 사건

[2018헌마55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5월 30일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되어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허용되었으므로, 기존에 이를 금지하였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조항들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1.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금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라 한다)은 학교로 하여금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고,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초등학교 1·2학년의 교과에는 영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과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구 공교육정상화법(2014. 3. 11. 법률 제12395호로 제정되고, 2019. 3. 26. 법률 제16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서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부칙(2014. 9. 11. 대통령령 제25591호) 제2조에 따라 위 시행령 제17조는 2018. 2. 28.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2018. 3. 1.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도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금지되었다.

○ 이에 초등학교 1학년생인 청구인 박OO 및 그 아버지인 청구인 박OO은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제1항 후문, 구 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금지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경과

○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공교육정상화법이 2019. 3. 26. 법률 제16300호로 개정되면서 제16조 제4호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직접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다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4. 3. 11. 법률 제12395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후문, 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4. 3. 11. 법률 제12395호로 제정되고, 2019. 3. 26. 법률 제16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4. 9. 11. 대통령령 제25591호로 제정된 것) 제17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4. 3. 11. 법률 제12395호로 제정된 것)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 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4. 3. 11. 법률 제12395호로 제정되고, 2019. 3. 26. 법률 제16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4. 9. 11. 대통령령 제25591호로 제정된 것)

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관련조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9. 3. 26. 법률 제1630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권리보호이익 인정 여부(소극)

-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 251 등 참조).
-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어 2019. 3. 26.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 후학교 과정이 허용되었는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심판청구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자,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보 도 자 료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2018헌마1208·1227(병합)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19. 5. 30.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8. 11. 12.에 한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18-151호)” 가운데 ‘2019년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청구인 14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각하, 기각]

□ 사건개요

- 피청구인은 변리사시험 실시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2018. 11. 12.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18-151호)”를 하였는데, 위 공고는 2019년에 시행되는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에서 그 이전의 시험과는 달리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배점 20점의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하도록 되어 있었다.
- 청구인들은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피청구인의 위 공고 가운데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하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12. 24.(2018헌마1208) 및 2018. 12. 31.(2018헌마1227)에 각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8. 11. 12.에 한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18-151호, 이하 ‘이 사건 시행계획’이라 한다)” 가운데 ‘2019년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고의 내용(밑줄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공고]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 2018-151호)

2. 2019년 및 2020년 변경사항

- 2019년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

- 다만, 2019년 제2차 시험에서의 실무형 문제 출제범위는 아래와 같고, 배점은 20점으로 함

	특허법	상표법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세서(청구범위에 한함) ▪ 의견서(의견내용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서(의견내용에 한함) ▪ 이의신청서(이의신청 취지 및 이의신청 이유에 한함)
심판·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판청구서(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판청구서(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한함) ※ 특허거절결정불복, 특허무효에 한해 출제(재심·상고심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한함) ※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 상표등록무효에 한해 출제(재심·상고심은 제외)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형 문제에서 다루는 발명은 '협의의 물건발명'에 한함 	

결정주문

1. 청구인 1, 2, 4, 7, 11, 12, 14, 17, 22, 23, 29, 32, 34, 36의 심판청구를 각각 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의 요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 이 사건 공고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만으로는 변리사 제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지 여부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확정된다. 이 사건 공고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자기관련성

- 이 사건 공고는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청구인 1, 2, 4, 7, 11, 12, 14, 17, 22, 23, 29, 32, 34, 36은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사람 또는 위 시험에 접수하였다가 취소한 사람들로서, 같은 해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은 위 제2차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반면, 나머지 청구인들은 2018년 제55회 변리사 제1차 시험 또는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로,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

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인정되고, 다른 적법요건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소극)

○ 이 사건 공고의 근거법률인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입법자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운영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이상, 행정부로 하여금 해당 자격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험제도를 운영·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험과목 및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률로 전부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적절하지 않다. 위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변리사의 직무범위, 변리사시험 제도의 목적, 변리사법 제4조의3이 정한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자의 요건 등을 종합하면, 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변리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소양 및 그 소송대리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공부하여야 할 과목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시험실시 방법, 합격자 결정 기준·방식 등은 시험제도에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변리사시험 시행, 합격자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은 예측가능성이 인정된다.
-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공고가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변리사 제2차 시험을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주관식’은 주어진 물음이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게 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논술’이란 어떤 것에 관하여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 피청구인이 출제하려는 실무형 문제란, 법 해석, 판례 동향, 각종 제도·이론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와 자료에 따라 의견서,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소장 중 신청·청구의 취지 또는 그 신청·청구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이유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특허에 있어 구체적인 청구범위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여야 하는 명세서의 청구범위란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형 문제가 변리사법 시행령 제

3조 제2항이 예정한 ‘주관식 논술시험’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공고가 위 변리사법 시행령 조항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 이 사건 공고는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응시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심화되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리사를 선발·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① 피청구인은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목적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를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변리사시험의 본질, 변리사의 직무범위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청구인은 2015년부터 ‘실무형 문제’의 출제 등을 예고하면서, 예시문제, 준비방법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④ 따라서 실무형 문제가 수험생들이 전혀 준비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시행계획은 이 사건 공고를 하면서도, 문제의 난도, 답안의 분량 등을 고려하여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의 시험시간을 20분 연장한 점, ⑥ 이 사건 공고가 출제를 예고하는 실무형 문제의 배점은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서 각 20점인 점, ⑦ 변리사 시험 단계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변리사의 직무능력 강화 효과를 동등하게 달성하면서도 위 방식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고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실무형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지만, ① 실무형 문제라는 새로운 방식이 생소한 것은 대부분의 응시자들도 마찬가지인 점, ②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필연적으로 불합격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③ 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는 채점위원이 부여한 점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점, ④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 이전부터 실무형 문제를 출제할 것을 예고하고, 수험생들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제한받게 되는 사익이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고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는다.

2. 평등권 침해 여부(소극)

- 전문직업인인 변리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전문적 지식 및 실무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응시자와 특허청 경력 응시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똑같이 변리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전문적 지식 및 실무적 소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한편, 변리사 제2차 시험 응시자들은 필수과목인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실무형 문제의 출제가 오로지 일반응시자인 청구인들에게만 불이익한 결과를 불러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 도 자 료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사건

[2017헌마1217 기소유예처분 취소]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5월 30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인이 병원 건물 내부에 지인을 소개한 기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의사로, 영리를 목적으로, 2017. 2. 초순경 청구인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같은 해 3. 16.까지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17. 8. 22.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7년 형제5356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를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은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의 실질은 청구인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내지 면제하여 주는 것에 불과

하고, 위 상품권을 환가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이를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위 상품권이 청구인 병원에서 사용되는 것 외에 달리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수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금품 등 제공 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 청구인이 게시한 포스터의 내용은 지인을 소개한 기존 환자에게 위와 같은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위 포스터는 사실상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만이 볼 수 있는 병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되었다. 또한 위 포스터가 게시된 기간은 약 1달 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품권은 청구인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과거 수차례 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55, 헌재 2013. 11. 28. 2011헌마652, 헌재 2017. 5. 25. 2016헌마213 등).
- 이 사건은 의료인이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를 상대로 자신의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사안으로, 위 상품권을 환가하거나 유통시키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위 상품권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어 위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또는 ‘금품 제공’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포스터는 병원 건물 1층에 게시되었고, 게시된 기간도 1달에 불과한 점, 위 상품권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